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서	이사회사무국
제정	2026.05.0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이 규정")은 주식회사 씨젠(이하 "당사")에 설치된 감사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통해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사항을 조사 평가하여 경영 활동에 조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내부통제제도'라 함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통제 절차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규정'이라 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외부감사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④ 이 규정에서 '외부감사인'이라 함은 외부감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규정에서 '내부감사부서'라 함은 감사 업무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고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내부의 조직을 말한다.

⑥ 이 규정에서 '회계 방침'이라 함은 재무제표(상법 제447조의 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와 그 부속명세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의 작성에 있어서 채용한 회계 처리의 원칙 및 절차를 말한다.

제4조 [감사의 기능적 부분]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기능별로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업무 이외의 업무가 법령·정관 및 방침에 의거하여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업무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회계 제도의 타당성과 회계 처리 내용이 법령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의 실시방식에 따른 구분]

①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실시하는 방식에 따라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로 구분된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결재한 업무의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견을 첨부하는 과정을 거치는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인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기능별로 감사하고, 업무 수행 체계와 과정의 유효성을 평가한 후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 감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종합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감독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

제6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독립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감사위원회의 권한]

① 감사위원회는 상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
2. 이사의 직무 수행을 감사할 권한
3. 영업에 관하여 이사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이사의 보고를 수령할 권한
6.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권한
7.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청구하고 소집할 권한
8. 이사회를 소집 청구하고 소집할 권한
9. 자회사가 있는 경우 영업에 관하여 자회사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
10. 이사의 위법 행위를 유지 청구할 권한
11. 상법상 각종 소를 제기할 권한

12.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
13. 정관으로 이사회가 재무제표(상법 제4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그 부속명세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권한
14.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감사할 권한

②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승인할 권한
2.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보고실태에 관해 보고를 받을 권한
3.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회사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권한
4. 회사의 회계 정보와 관련된 부정 행위를 알게 된 자의 고지와 그가 제출한 신고서와 그 증거 등을 수령할 권한
5.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를 수령할 권한
6.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권한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 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를 수령할 권한

제8조 [감사위원회의 업무]

① 감사위원회는 상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 시 이사회에 대한 보고
2.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 진술
3. 감사에 관한 감사록 작성
4.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

②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에 대한 감독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
3. 회사의 회계 정보와 관련된 부정 행위를 알게 된 자로부터 고지를 받는 경우 신고서 및 신고자 등으로부터 받은 증거 등을 신속하게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기는 것에 관한 사항
4. 회사가 회계 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조사의 결과 및 회사의 시정 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5.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마련

6. 외부감사인의 감사 보수와 감사 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6호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확인

③ 감사위원회는 전 2항에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장부, 증빙서·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회계 및 업무 관계 예금에 대한 조사와 자료 징구
6.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7.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8. 그 밖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9조 [감사위원회의 주의 의무] 감사위원회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독립 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사를 통해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를 비롯하여 회사 내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이사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검증하고,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회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합리화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및 이사의 직무 수행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언 또는 권고 등을 실시하고 미연에 중대한 손실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적시에 강구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는 감사 사항에 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규모, 업종, 경영상의 위험, 그 밖에 회사 고유의 감사 환경을 감안하여 이 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6.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상시 감사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론을 연구하며 감사 기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7. 감사위원회는 적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경영 전반과 관련하여 현안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경영 상황의 추이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8. 감사위원회는 평상 시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및 직원 등과의 의사 소통을 도모하고 정보의 수집 및 감사에 필요한 환경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9. 감사위원회는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합리적이면서도 적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감사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감사위원회는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양질의 지배구조의 확립과 운용을 위해서는 양호한 감사 환경의 정비가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을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인식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위원회의 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 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감사위원회의 책임]

① 감사위원회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외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장 감사환경의 구축 및 정비

제12조 [대표이사 등과의 소통]

①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대표이사의 경영 방침을 확인함과 동시에, 회사가 처리하여야 할 업무 및 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제반 위험을 비롯하여 감사에 필요한 회사 내부의 조직과 제도 및 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표이사와의 상호 인식을 제고하여 신뢰 관계를 높이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이사, 직원 및 외부감사인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 수집 및 감사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 실효성의 제고를 위한 조직 정비]

① 회사는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는 등 양호한 감사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전항에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효적이면서도 신속하게 구축되어 가동되도록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사회가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체계와 조직의 적절한 구축 또는 가동을 게을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에 신속하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에게 개선을 위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내부감사부서의 운영]

① 회사는 영업의 규모, 업종, 경영상의 위험, 기타 회사 고유한 사정을 고려하여 내부감사부서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그 운영 상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내부감사부서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로부터의 독립에 관한 사항
3. 이사 및 직원이 이사의 위법 행위 등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할 수 있는 회사 내부의 체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회사 내부의 제도에 관한 사항

③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에 속한 직원을 지휘·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④ 내부감사부서에 속한 직원은 징계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관련 체계 구축]

① 회사는 이사 및 직원이 이사의 위법 행위 등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러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전항에 정한 보고가 실효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내 규정의 제정 및 정비를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외부감사인의 직무 수행을 위한 환경 구축]

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이면서도 전문가로서 적절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 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에 참고가 되는 정보 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외부감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부감사인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 계획의 수립과 감사 실시

제17조 [감사 계획의 수립 및 업무 분담]

①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에 유의하고 중요성, 적시성 및 기타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감사 정책을 마련하고 감사 대상, 감사 방법 및 실시 시기를 적절히 선정하여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부감사부서 및 외부감사인 등과 긴밀한 협의 또는 의견교환을 통하여 조사범위를 정하고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 계획의 대상 기간은 정기주주총회일의 다음날부터 차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

④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업무를 감사위원회 위원 간에 적절히 분담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 정책 및 감사 계획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제18조 [내부감사부서 등과의 연계]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기타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부감사부서와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로부터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전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이사 또는 이사회에 대하여 조언하거나 권고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감사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제19조 [현장 조사]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본점과 지점, 공장, 사무소 등을 조사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 전반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회사의 업무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본.지점, 공장, 사무소 등을 조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에게 의견의 제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20조 [감사 내용 등의 보고 및 설명] 감사위원회는 감사 활동 및 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 수행 상황이나 감사 내용을 필요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감사 업무의 중요한 책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위원회의 업무감사

제21조 [이사의 의사 결정 등 감사]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의사 결정에 관하여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이 정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1. 이사의 의사결정이 대상이 된 사안을 오류없이 인식할 것
2. 이사의 의사결정의 과정이 합리적일 것
3. 이사의 의사결정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지 않을 것
4. 이사의 의사결정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을 것
5. 이사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일 것

② 이사의 의사결정이 전항 각 호의 사항에 반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는 유지를 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진술]

①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사록에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가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 [이사회 위원회 등에 출석]

①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 및 직무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출석할 기회가 보장되기 위하여 이사 등에 대하여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소집 통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사회의 결의 등에 대한 감사]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회가 회사의 목적 외의 행위,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사회의 감독 의무 이행 감사]

①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그 직무의 집행 상황을 적시에 적절히

이사회에 보고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이사회가 이사에 대한 감독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하여 감독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26조 [경업 거래 등에 대한 감사]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정한 거래 등을 함에 있어 의무를 위반할 사실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상법 제397조에 따른 경업 거래
2. 상법 제397조의2에 따른 회사 기회의 이용
3. 상법 제398조에 따른 자기 거래
4.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용공여거래
5.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6. 상법 제341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의 질취
7. 상법 제342조에 따른 자기주식의 처분

② 전항 각 호에 정하는 거래 등에 대하여 내부감사부서의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감사위원회가 감사한 결과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는 당해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사가 회사의 이익에 앞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이사에게 당해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

①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로부터 각 영업연도의 영업보고서를 수령하고, 해당 영업보고서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영업연도 내내 이사의 직무 수행을 감사한 후 해당 영업연도에 관한 영업보고서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의견을 적어야 한다.

③ 영업보고서의 감사에 있어서 감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 [문서・정보 관리에 대한 감사]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업무 수행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내용 등에 관하여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소정의 문서·규정, 중요한 기록, 기타 중요한 정보가 적절히 정비되고, 보존

및 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정보공시체계 등에 대한 감사]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감사보고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공고 기간과 절차 등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회사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가 적절한 정보공시체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정보공개기준을 제정하고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공시하는 정보에 대해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또는 직원 등에게 그 정보의 공시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시되는 정보에 중요한 오류가 없으며 내용이 오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시에 적절한 방법에 의해 공시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사에 대한 보고 요구]

①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로부터 영업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조언 또는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의 조사]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업무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중요한 회사 재산의 취득, 보유 및 처분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전 3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자회사 등의 조사권]

① 모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연결 경영의 관점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모회사의 감사위원회는 내부통제제도가 기업 집단 내에서 적절히 구축되어 가동하고 있는지에 유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업 집단 전체의 감사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회사 등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내부감사부서 및 외부감사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경우에 모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장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

제33조 [회계방침 등에 대한 감사]

① 감사위원회는 회계방침이 회사 재산의 상황, 회계 서류에 미치는 영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공정한 회계 관행 등에 비추어 적정한가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회계방침을 변경하려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미리 변경의 이유 및 그 영향에 대해 보고할 것을 이사회에 요구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그 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제34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

① 대표이사가 영업연도의 재무제표 등을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수령한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 및 직원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① 감사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한 대표이사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대면으로 보고받아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및 취약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2.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제1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고 서명하여 보고 내용에 첨부하였다는 사실
   가. 보고 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나. 보고 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다.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 사항을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②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전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회사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⑤ 감사위원회는 정기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감사의견의 기재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① 감사위원회는 해당 영업연도에 관한 재무제표 및 그 부속 명세서가 회사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에 감사 방법 및 결과의 상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적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계 방침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그 밖에 회계 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그러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

제37조 [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위원회는 그가 실시한 감사 방법, 감사 결과 및 감사 의견의 형성에 이르는 과정 및 이유 등을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감사록에는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회의 소집과 보고]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부정 행위를 하거나 해당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사실 또는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 스스로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행위가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사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하는 등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 및 설명 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무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의사록에 의사의 경과의 요령 및 그 결과가 적절히 기재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장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정 등 관련 업무

제40조 [외부감사인의 선정과 해임]

① 감사위원회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회계법인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감사 시간・감사 인력・감사 보수 및 감사 계획의 적정성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감사 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 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및 전문성(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 감사 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
3.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한 외부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의 의견 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전기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 시간・감사 인력・감사 보수・감사 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나. 전기감사인이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 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감사와 전기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용
   다.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대면 회의 개최 횟수, 참석자 인적 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라. 그 밖에 외부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전기감사인 외의 다른 외부감사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전기감사인을 해임함에 따라 해당 전기감사인이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그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41조 [외부감사인의 보수 등]

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보수와 감사 시간, 외부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①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계획의 개요와 재무 보고를 둘러싼 내부통제에 관련된 위험 평가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감사중점항목 등에 관하여 설명을 받는 등 외부감사인과 의견을 교환을 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의 실시 경과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 이행하여야 하는 통보의 상대방이 된다.

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회사가 회계 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 이행하여야 하는 통보의 상대방이 된다.

⑥ 전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전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제6항과 제7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대표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장 감사위원회의 주주대표소송 관련 업무

제43조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서의 대표]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② 회사가 상법 제403조 제1항 또는 제406조의2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청구 수령, 제소 여부의 통지]

① 감사위원회는 주주로부터 이사를 상대로 그의 책임을 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청구를 받은 경우 그 대응 방안을 충분히 심의한 후 제소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제소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관계 부서에 대하여 상황 보고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수집하고, 관계 자료를 수집하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적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판단 결과를 제소 청구한 주주, 이사회 및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된 이사에게 통지한다.

제45조 [소송참가 결정]

① 감사위원회는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가 원고 주주 측에 참가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소송 참가에 대한 당부 판단에 있어서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관계 부서에 대하여 상황 보고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수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가 소송 참가 결정의 당부 판단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여 상당한 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 [소송상 화해에 대한 대응]

① 감사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원고 주주와 피고 이사 간에 화해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는 경우 신속하게 그 대응 여부를 충분히 심의한 후 화해에 이의를 제기할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소송 상의 화해의 당부 판단에 있어서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관계 부서에 대하여 상황보고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수집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소송상의 화해의 당부 판단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여 상당한 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